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박준희 의원 대표발의)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747호
- 나. 제출자 : 박준희 의원 등 10명
- 다. 제출일자 : 2015년 9월 1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5년 9월 17일

## 2. 제안이유

- 관련 법령인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7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정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7조의2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(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)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시 ‘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해야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’, ‘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’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자는 것임.

### 나. 사회적기업 관련 계획의 개요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- 한편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·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함께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현재 서울시에서는 ‘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’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음.
  - ‘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’은 일자리창출사업, 전문인력 지원사업,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  - 지원계획에 포함사항으로 ‘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’, ‘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’, ‘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’, ‘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’, ‘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’ 등으로 예시하고 있음.
-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의 육성계획에는 ‘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’, ‘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’이 누락되어 있으며, 서울시의 ‘(예비)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 계획’에도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.
- 이런 문제점에 따라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

조례」의 근거 법률인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하며,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을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</p> <p>3.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4.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</p> <p>5.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6.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지원,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</p> <p>7.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</p> <p>8.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</p> <p>9.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</p>	<p>제4조(사회적기업 육성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</p> <p>3.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</p> <p>4.</p> <p>5.</p> <p>6.</p> <p>7.</p> <p>8.</p> <p>9.</p> <p>10.</p> <p>11.</p>

<p>10.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우선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</p>	<p>12.</p>
<p>11.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~ ④ (생략)</p>	<p>13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